



#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오성빌딩 304호

전화 : 1833-6051 팩스 : 02-6455-6051

담당자 : 손해사정사 정승협(010-9073-0853)

수 입 일 자	2025-05-20	제 출 처	OOO지점 OOO 팀장님
고 객 명	OOO 고객님의	담 당 자	손해사정사 정승협
질 의 사 항	Q. 타인 소유의 진돗개에게 상해를 입은 후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 손해사정 산출 및 근거

### - 기초제공자료

텍스트 질의

### - 담보 및 약관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개에게 물린 피해자는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 소정의 점유자·관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유보조자 또는 간접점유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견주, 점유자 등은 과실치사상죄로 형법 제26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외출하였거나, 맹견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상해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항).

## - 적용여부

질의해주신 내용 중 과거 강아지가 물린 사건을 배상받은 사실로 미루어 견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주는 앞서본 바와 같이 민법 제759조에 의거, 피해자의 신체와 재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 견주는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강제됩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에 갈음한 보관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 성립 요건으로 한,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점유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로 운용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해당 피해에 한함).

1)위자료 : 피해정도로 최근 하급심 판결사례에 따라 결정(서울중앙지법 2018. 1. 12.선고2017나 52612판결(손해배상)참조, 개에게 다리를 물려 다리 부분에 상처, 위자료 1백만원 선고)

2)일실수입 :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년 상반기 도시평균임금 일당 169,804원 \* 입원일수, 만65세가 초과된 주부의 경우 일실수입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3)직불치료비 : 병원영수증의 치료비 + 약값

4)향후치료비 : 향후 지출할 치료비, 약제비, 개호비, 성형추정비 등

상기 항목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견주의 사고시 조치, 입마개, 목줄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되며, 최근 하급심 판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견주의 책임비율은 50 -70%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견주의 책임비율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의 고소장 제출시 필요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은 3주 미만의 경우 10만원, 3주 이상의 경우 15만원의 제증명료가 발생합니다.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민사로만 해결을 원하신다면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접수하였다고하여 배상접수가 불가하지 않고 공단에서 제3자 배상건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공단부담금을 구상합니다.

## - 점유자 배상접수 거부시 접수방법

견주가 배상접수를 거부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견주에게 출석요청을 합니다.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니 견주 입장에서든 문제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을겁니다. 기존에 접수한 대로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2)과거 피해자의 개 피해사건으로 지급받은 보험회사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사실확인원 제출과 함께 피해자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청구주체에 대한 조언

현재 주민등록거소지인 성북구의 지자체보험 가입과 담보여부 확인 결과, '25년도 성북구 구민안전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는 담보는 상해진단위로금입니다. 4주-5주 진단시 : 10만원, 6주-7주 진단시 : 20만원, 8주이상 진단시 : 30만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예상 2차보험금

- 진단서에 진단주수 표기를 요청하신 후 4주이상 진단이 되신 경우 지자체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정액제 담보의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작성·교부된 손해사정 의견서는 고객과 모집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와는 차이가 있으며 당사에서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손해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5. 20.

담당손해사정사 정 승 협



[금융감독원 손사 제BD00001378호]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